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HDC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집합투자업자 명칭 : HDC자산운용 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작성기준일 : **2023년 3월 10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년 3월 24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 가입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3.03.10

HDC 퇴직연금 좋은지배구조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A4777]

투자위험등급 :						HDC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하락위험, 금리변동 위험, 원본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HDC 퇴직연금 좋은지배구조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일부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합니다.</p> <p>※ 비교지수 : KIS국공채지수 2~3년*60% + KOSPI*40%</p> <p>주)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2.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HDC 퇴직연금 좋은지배구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투자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공채 및 신용등급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HDC 퇴직연금 좋은지배구조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운용과 캐리(이자수익) 투자 - 국공채 위주의 편입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 A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 편입으로 이자수익률을 제고 - AA 등급 이상 은행 후순위채 및 은행 신종자본증권 편입으로 이자수익률을 제고 - A- 등급 이상 주식관련사채 편입으로 초과수익 확보 - 국채선물 및 스왑 등을 활용한 헛지전략 구사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되, 일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주요 투자전략 및	<p>주식부문 포트폴리오는 블루칩 위주의 종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의 좋은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최적의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p>	

	위험관리	다. Bottom-Up(상향식) 방식에 의거한 철저한 기본적 분석방식으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한편, Top-Down(하향식) 방식에 근거한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연,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8000	0.535	1.140	0.8026	83	169	258	449	1,001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1/12/23~ 2022/12/22	2020/12/23~ 2022/12/22	2019/12/23~ 2022/12/22	2017/12/23~ 2022/12/22											
	투자신탁	2011-12-23	-6.69	-0.59	3.92	2.21	3.17										
	비교지수	2011-12-23	-9.46	-3.06	1.60	0.92	2.51										
	수익률 변동성(%)	2011-12-23	6.16	6.31	7.50	6.54	5.41										
주1)비교지수 : KIS국공채지수 2-3년*60% + KOSPI*4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 채권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주식운용 부문>																	
장승성	1990	책임운용 (과장)	22	3,307	1.01	-	2.14	2.93	3년 2개월								
정동욱	1979	부책임운용 (본부장)	25	3,369	2.14	-	2.14	2.93	8년 8개월								
<채권운용 부문>																	
허정기	1973	책임운용 (팀장)	14	7,439	-	-	2.14	2.93	16년 1개월								
이상	1988	부책임운용 (과장)	14	7,439	2.14	-	2.14	2.93	2년 7개월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																	

	<p>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p>주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주요 투자위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투자원본 손실위험</td> <td style="padding: 5px;">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 <td style="padding: 5px;">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이자율(금리) 변동 위험</td> <td style="padding: 5px;">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주식가격 변동위험</td> <td style="padding: 5px;">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td> <td style="padding: 5px;">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td> </tr> </tbody> </table> <p>※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금리) 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금리) 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적용 매입	환매	15시 30분 이전 3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관련 세금 등 공제 후												

		방법	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적용 매입	15시 30분 경과후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공시장소</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과세	<p>구 분</p> <p>집합투자기구</p> <p>수익자</p> <p>퇴직연금제도 의 세제</p>	<p>과세의 주요내용</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HDC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215-3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dc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년 03월 24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1. 재무정보 및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c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c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477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 · 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477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11.12.23	- 최초 설정
2012.01.02	-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아이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7.17	- 비교지수 변경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 X 60% + KOSPI X 40% ⇒ KIS국공채지수 2~3년 X 60% + KOSPI X 40%
2013.01.1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홍현기 -> 홍호덕) -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 삭제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 및 제91조, 제92조, 제216조, 제270조 개정(2012.06.29.) 사항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변경 등
2014.02.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 -> 외환펀드서비스) - 자본시장법 개정(2013.5.28.) 및 소득세법 개정 (2014.1.1.) 사항 반영: 수익자총회 의결 방식 변경 및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변경 등
2014.04.01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정훈 -> 서용진)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투자위험 등급 6단계 체계로 변경)
2016.07.30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8.03.30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서용진 -> 정관옥)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2021.01.13	-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 → 4등급)
2021.02.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호덕 → 박정훈)
2021.07.0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정훈 → 홍찬양)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관옥 → 이용재)
2022.02.1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찬양 → 홍찬양 / 이용재)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용재 → 정동욱 / 이상)
2022.06.29	- 채권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용재 → 허정기)
2023.02.17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2023.03.24	- 주식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찬양 → 장승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HDC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2층 (우 07333) Tel.02-3215-3000

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2023.03.1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 채권혼합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기구 수 (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주식운용 부문>										

장승성	1990	책임 운용 (과장)	22	3,307	1.01	-	2.14	2.93	* 운용경력 : 3년 2개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6.07~'19.12 DB 손해보험 주식운용 - '19.12~'21.10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1.10~(현재)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	------------------	----	-------	------	---	------	------	--

정동욱	1979	부책임 운용 (본부장)	25	3,369	2.14	-	2.14	2.93	* 운용경력 : 8년 8개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10.05~'12.06 한가람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12.08~'14.07 LIG 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14.08~'21.05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1.06~(현재)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	--------------------	----	-------	------	---	------	------	--

허정기	1973	책임 운용 (팀장)	14	7,439	-	-	2.14	2.93	* 운용경력 : 16년 1개월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00.01~'05.09 동양증권 지점 마케팅 - '05.10~'07.02 동양자산운용 경영관리/인사 - '07.03~'13.02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 - '13.02~'21.07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 - '21.08~'22.04 파인만자산운용 채권운용 - '22.04~(현재) HDC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	------------------	----	-------	---	---	------	------	---

이상	1988	부책임 운용 (과장)	14	7,439	2.14	-	2.14	2.93	* 운용경력 : 2년 7개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8.10~'20.08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 '20.08~'21.09 현대인베스트먼트 채권운용본부 - '21.09~(현재) HDC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	-------------------	----	-------	------	---	------	------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홍현기	최초 설정 ~ 2013.01.15
	홍호덕	2013.01.16 ~ 2021.01.31
	박정훈	2021.02.01 ~ 2021.07.01
	홍찬양	2021.07.02 ~ 2022.02.16
	홍찬양 / 이용재	2022.02.17 ~ 2022.06.28
	<u>홍찬양</u> / 허정기	2022.06.29 ~ 2023.03.23
	<u>장승성</u> / 허정기	2023.03.24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정훈	최초 설정 ~ 2014.03.31
	서용진	2014.04.01 ~ 2018.04.03
	정관옥	2018.04.04 ~ 2021.07.01
	이용재	2021.07.02 ~ 2022.02.16
	정동욱 / 이상	2022.02.17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子)투자신탁	모(母)투자신탁	HDC퇴직연금평생직장 증권모투자신탁(채권)	HDC퇴직연금좋은지배 구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채권 : 60% 이상, 어음 : 40% 이하 등	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등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1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60% 이상	10% 이하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60% 이상	20% 이하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60% 이상	30% 이하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60% 이상	40% 이하	

주)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HDC 퇴직연금 평생 직장증권 모투자신탁 (채권)	주요 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등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공채 및 신용등급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IS 국공채지수 2~3년 * 100%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운용과 캐리(이자수익) 투자 - 국공채 위주의 편입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 A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 편입으로 이자수익률 제고 - AA 등급 이상 은행 후순위채 및 은행 신종자본증권 편입으로 이자수익률 제고 - A- 등급 이상 주식관련사채 편입으로 초과수익 확보 - 국채선물 및 스왑 등을 활용한 헛지전략 구사
	주요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60% 이상 - 채권 40% 이하 [채권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를 포함합니다.] - 어음 40% 이하
HDC 퇴직연금 좋은 지배구조증권 모투자 신탁(주식)	투자목적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되, 일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OSPI * 100%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주식부문 포트폴리오는 블루칩 위주의 종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의 좋은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최적의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Bottom-Up(상향식) 방식에 의거한 철저한 기본적 분석방식으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한편, Top-Down(하향식) 방식에 근거한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일부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1)}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수익증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 이상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
	40% 이하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 의 예치	10% 이하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1)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1)}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후순위채권(단, AA등급 이상에 한하며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단, 취득시 A- 등급 이상에 한하며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후순위채권(단, 취득시 AA등급 이상에 한하며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취득시 신용평

			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⑧	증권의 대여 ^{주2)}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⑨	증권의 차입 ^{주3)}		① 내지 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p>①~⑩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 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1)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 가능 			
주3)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 목적 위해 증권 차입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1)}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출자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취득시 A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단, 취득시 A- 등급 이상에 한하며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A- 이상이어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금리스왑거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⑦ 집합투자 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채권과 채무증권 등으로 구성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②의 채권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⑨	증권의 대여 ^{주2)}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⑩	증권의 차입 ^{주3)}	① 내지 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 재산과 거래
⑫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①~⑪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용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 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1)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 가능		
주3)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 목적 위해 증권 차입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제한 종류	투자 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종류	투자 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거래	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설립된 법인이 발행한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제한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4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 위의 “동일종목 투자제한” 및 “파생상품 거래”的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제한 종류	투자 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동일종목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설립된 법인이 발행한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p>

	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제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동일종목 투자제한" 및 "파생상품 거래"의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적극적 운용과 캐리(이자수익) 투자
- 국공채 위주의 편입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 A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 편입으로 이자수익률 제고
- AA 등급 이상 은행 후순위채 및 은행 신종자본증권 편입으로 캐리수익률 제고
- A- 등급 이상 주식관련사채 편입으로 초과수익 확보
- Target Curve(목표수익률곡선) 2.5년 내외의 장기운용으로 채권의 주 특성인 이자수익과 자본차익 적극 추구
- Yield Curve(수익률곡선) 및 스프레드(가산금리)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전략 실시
- 크레딧 종목은 중기물로 캐리수익 추구, 국고채 등 안전자산은 장기물로 구성하여 자본차익 및 유동성 위험 관리
- 국채선물 및 스왑 등을 활용한 헛지 전략 구사

(2) HDC 퇴직연금 좋은지배구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식부문 포트폴리오는 블루칩 위주의 종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의 좋은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최적의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Bottom-Up(상향식) 방식에 의거한 철저한 기본적 분석방식으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한편, Top-Down(하향식) 방식에 근거한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상기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 KIS국공채지수 2~3년 * 60% + KOSPI * 40%

주 1) 비교지수 선정사유 :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비중,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 비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 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KIS채권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주)(www.bond.co.kr)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

(1)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비교지수 : KIS국공채지수 2~3년 * 10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HDC 퇴직연금 좋은지배구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비교지수 : KOSPI * 10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시장리스크 발생 시 대내외 환경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합니다.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 옵션 등과 같은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전략적 자산배분부문에서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NAV의 40% 이내로 주식 모투자신탁의 편입비중을 유지합니다. 주식 모투자신탁은 적극적인 주식편입비중전략은 지양하는 대신 NAV의 60% 이상으로 주식편입비중을 유지하되, 업종대표블루칩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주, 지배구조 우량기업 및 저평가가치주 등에 대하여 경기사이클별로 편입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취할 계획입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2)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40% 이하를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증권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HDC 퇴직연금 평생직장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HDC 퇴직연금 좋은지 배구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채권의 이자수익과 가격변동 및 주식의 가치변동에 의해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 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금리) 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채무불이행 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사채의 위험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 부채의 상환이 종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되는 특성을 지닌 채권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염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기구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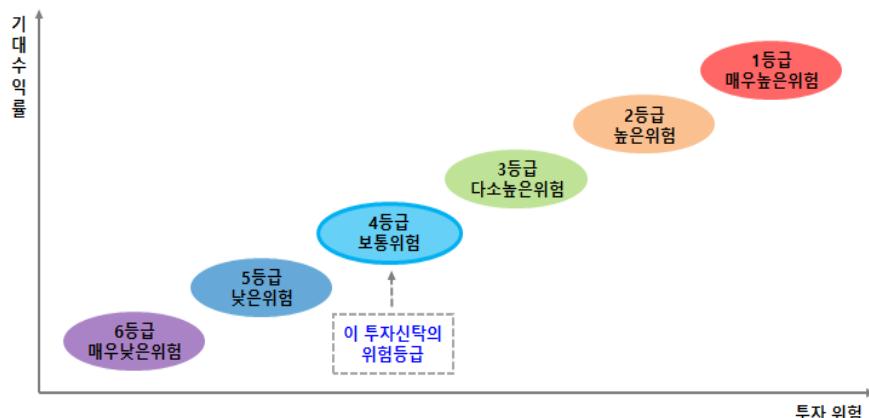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 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 거래 위험	<u>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7.48%이며, 이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40%이하를 투자하는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위험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주식에의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여건 변화, 채권/주식시장 및 개별 기업의 재무·영업 환경 등이 채권/주식의 가치변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21.01.13	5등급	4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변경
2016.07.02	2등급	5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변경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매 결산시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이란?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입니다.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시

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 참고 : HDC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예시)]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상기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집합투자업자 HDC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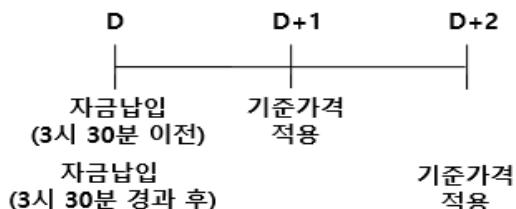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1)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2)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 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 단,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주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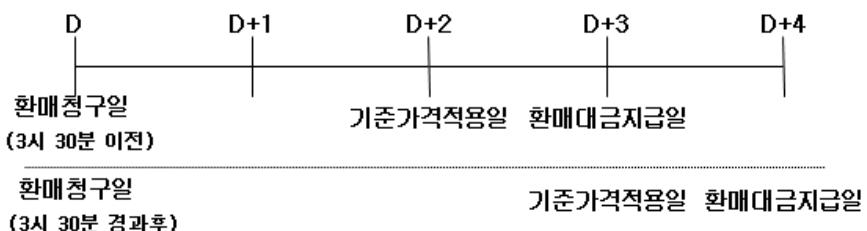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2)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 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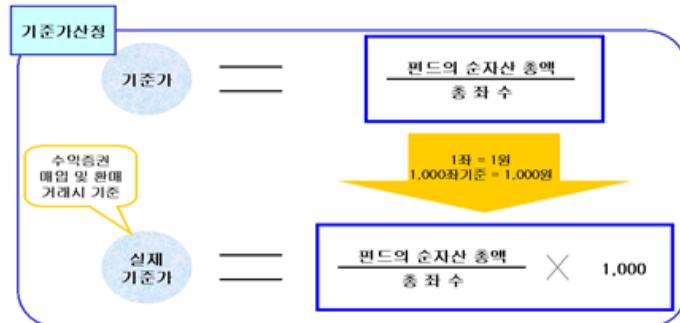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http://www.hdcasset.com), 각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 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해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u> 에서 공표하는 <u>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④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⑤ 기업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⑥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 로 평가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구분	주요내용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가입자격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선취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환할 수 없으므로, 전환수수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 비용	증권 거래 비용
투자신탁	0.2300	0.5350	0.0200	0.0150	0.8000	0.0026	0.8026	1.140	0.8065	0.0833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직전 회계연도 : 2021.12.23 ~ 2022.12.22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5)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 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채권혼합형, 2022.12.30 기준)

※ 모자형 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 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 (위원회보수, 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후원기금),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증권거래비용(원)	금융비용(원)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16,513,402	54,161

④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또는 작성일까지의 연환산 추정치 비율로 상기 표에 기재 하였으며,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168	257	447	9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3	169	258	449	1,001

주)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자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 규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0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 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 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1기(2021.12.23 ~ 2022.12.22)	면제	-
제10기(2020.12.23 ~ 2021.12.22)	면제	-
제9기(2019.12.23 ~ 2020.12.22)	면제	-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요약재무정보		
	제 11 기 2022.12.22	제 10 기 2021.12.22	제 9 기 2020.12.22
운용자산	19,117,412,648	21,500,739,239	13,856,329,480
유가증권	18,893,027,193	21,437,181,068	13,748,282,72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24,385,455	63,558,171	108,046,7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16,532	155,043,849	1,476,492,029
자산총계	19,118,129,180	21,655,783,088	15,332,821,50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8,341,057	1,252,096,547	1,772,251,130
부채총계	38,341,057	1,252,096,547	1,772,251,130
원본	20,447,995,855	20,403,686,541	13,560,570,379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1,368,207,732	0	0
자본총계	19,079,788,123	20,403,686,541	13,560,570,379
운용수익	-1,260,411,429	1,083,836,450	1,797,221,687
이자수익	4,208,003	154,297	150,472
배당수익	0	154,127,395	1,476,472,046
매매평가차손익	-1,264,619,432	929,554,758	320,599,16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59,060,426	171,137,967	103,190,795
관련회사보수	158,540,046	170,635,547	102,878,47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20,380	502,420	312,320
당기순이익	-1,419,471,855	912,698,483	1,694,030,892
매매회전율	0	0	0

주1)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 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11 기 2022.12.22	제 10 기 2021.12.22	제 9 기 2020.12.22
운용자산	19,117,412,648	21,500,739,239	13,856,329,480
현금및예치금	224,385,455	63,558,171	108,046,756
현금및현금성자산	224,385,455	63,558,171	108,046,756
유가증권	18,893,027,193	21,437,181,068	13,748,282,724
수익증권	18,893,027,193	21,437,181,068	13,748,282,724
기타자산	716,532	155,043,849	1,476,492,029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41,267	898,135	0
미수이자	375,265	18,319	19,983
미수배당금	0	154,127,395	1,476,472,046
자 산 총 계	19,118,129,180	21,655,783,088	15,332,821,509
기타부채	38,341,057	1,252,096,547	1,772,251,130
해지미지급금	875,045	2,302,909	0
미지급운용수수료	10,762,619	12,219,026	7,884,170
미지급판매수수료	25,034,769	28,422,490	18,339,263
미지급수탁수수료	935,898	1,062,546	685,582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701,926	796,920	514,188
수수료미지급금	30,800	30,880	20,010
미지급이익분배금	0	1,207,261,776	1,744,807,917
부 채 총 계	38,341,057	1,252,096,547	1,772,251,130
원 본	20,447,995,855	20,403,686,541	13,560,570,379
이익잉여금	-1,368,207,732	0	0
자 본 총 계	19,079,788,123	20,403,686,541	13,560,570,379
부채 및 자본 총계	19,118,129,180	21,655,783,088	15,332,821,509

주)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손익계산서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2021.12.23 ~ 2022.12.22	2020.12.23 ~ 2021.12.22	2019.12.23 ~ 2020.12.22
운용수익(운용손실)	-1,260,411,429	1,083,836,450	1,797,221,687
투자수익	4,208,003	154,281,692	1,476,622,518
이자수익	4,208,003	154,297	150,472
배당금수익	0	154,127,395	1,476,472,046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57,259,718	1,002,040,783	520,040,601
지분증권매매차익	15,785,335	208,494,946	187,128,214
지분증권평가차익	141,474,383	793,545,837	332,912,387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21,879,150	72,486,025	199,441,432
지분증권매매차손	96,501,392	4,857,975	1,248,098
지분증권평가차손	1,325,377,758	67,628,050	198,193,334
운용비용	159,060,426	171,137,967	103,190,795
운용수수료	45,580,263	49,057,720	29,577,562
판매수수료	106,023,660	114,112,525	68,799,984
수탁수수료	3,963,499	4,265,887	2,571,960
사무수탁수수료	2,972,624	3,199,415	1,928,969
기타운용비용	520,380	502,420	312,32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419,471,855	912,698,483	1,694,030,892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67.96	45.24	135.30

주)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12/23~2020/12/22	13,036	12,955	1,365	1,498	840	842	13,561	15,305
2020/12/23~2021/12/22	13,561	13,561	10,007	10,485	3,164	3,347	20,404	21,611
2021/12/23~2022/12/22	20,404	20,404	675	644	1,837	1,755	20,448	19,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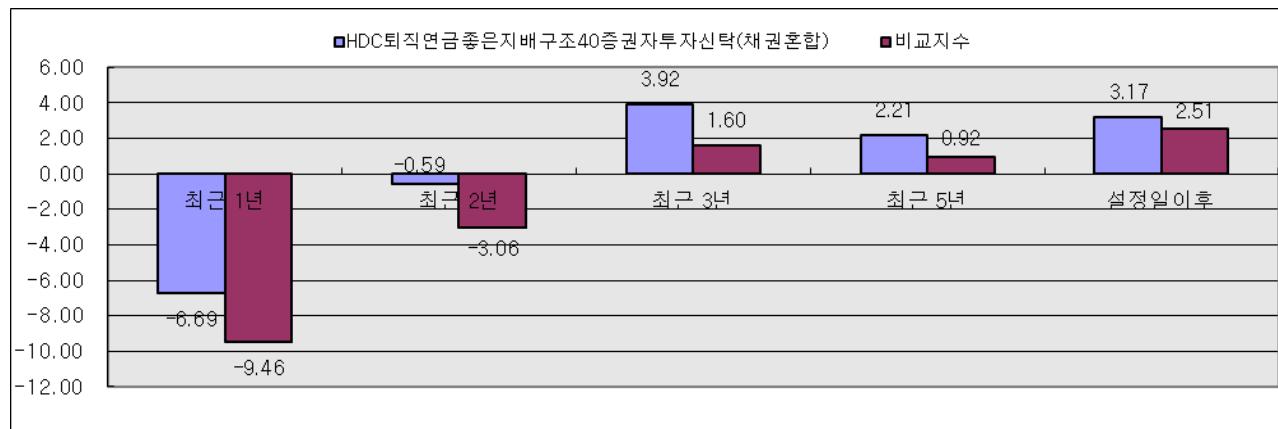
주)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과거의 투자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1/12/23~ 2022/12/22	2020/12/23~ 2022/12/22	2019/12/23~ 2022/12/22	2017/12/23~ 2022/12/22	(%)
투자신탁(운용)	2011-12-23	-6.69	-0.59	3.92	2.21	3.17
비교지수	2011-12-23	-9.46	-3.06	1.60	0.92	2.51
수익률 변동성(%)	2011-12-23	6.16	6.31	7.50	6.54	5.41

주1)비교지수 : (국공채 2-3년 X 60% + KOSPI X 40%)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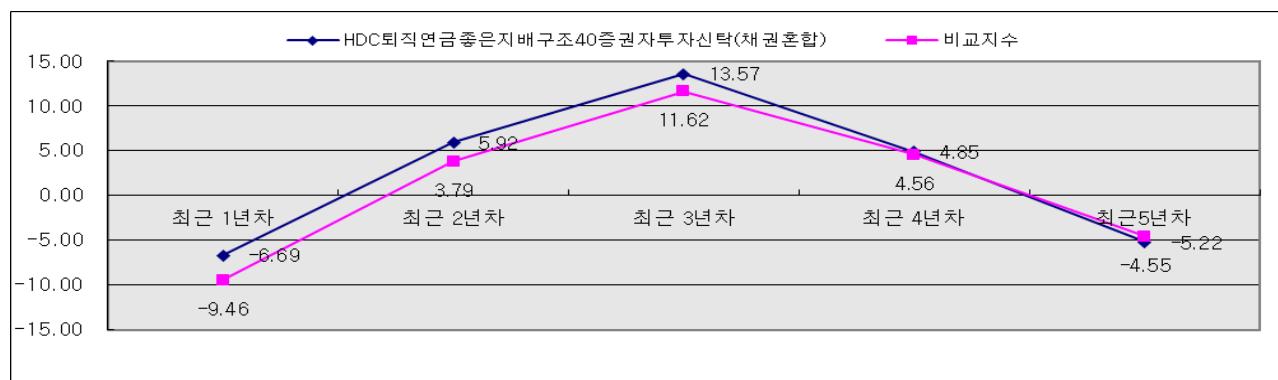
주3)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4)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 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	최근 5년차
		2021/12/23~ 2022/12/22	2020/12/23~ 2021/12/22	2019/12/23~ 2020/12/22	2018/12/23~ 2019/12/22	2017/12/23~ 2018/12/22

투자신탁(운용)	2011-12-23	-6.69	5.92	13.57	4.85	-5.22
비교지수	2011-12-23	-9.46	3.79	11.62	4.56	-4.55

주1)비교지수 : (국공채 2-3년 X 60% + KOSPI X 40%)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도별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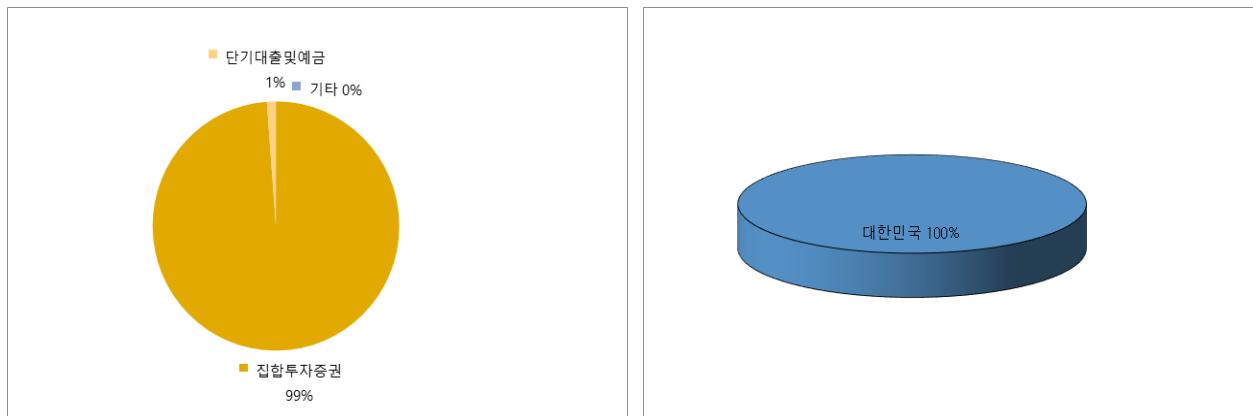
주5)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2.12.22 현재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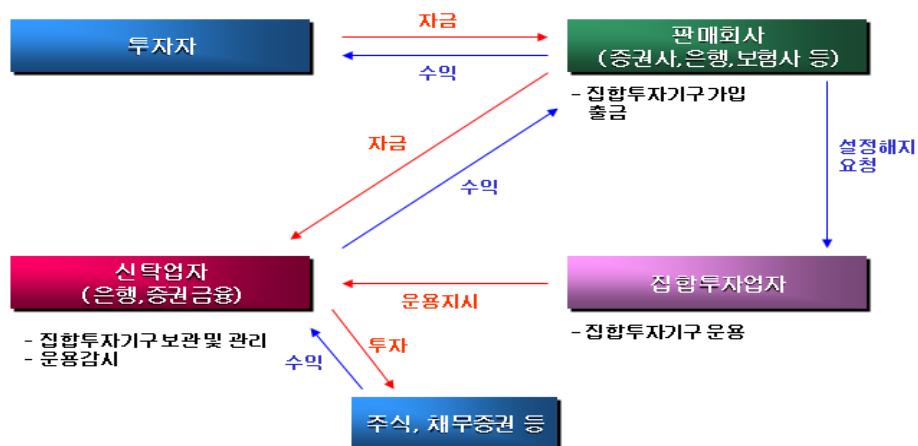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 민국	0	0	0	18,893	0	0	0	0	0	225	0	19,118
	(0.00)	(0.00)	(0.00)	(98.82)	(0.00)	(0.00)	(0.00)	(0.00)	(0.00)	(1.18)	(0.00)	(100.00)
자산 합계	0	0	0	18,893	0	0	0	0	0	225	0	19,118
	(0.00)	(0.00)	(0.00)	(98.82)	(0.00)	(0.00)	(0.00)	(0.00)	(0.00)	(1.18)	(0.00)	(100.00)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HDC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1 대영빌딩 2층(T. 3215-3000) www.hdcasset.com
회사 연혁	2000. 3. 9. 예비허가 신청 2000. 6. 27. 아이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0. 7. 24. 영업허가 및 수익증권 최초상품 인가 취득 2000. 8. 29.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5. 22. 본점 사무실 이전 2012. 1. 2. HDC자산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자본금: 158억
주요 주주현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87.34%, 특수관계인 포함), 기타(12.66%)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제23기	제22기	항 목	제23기	제22기
	2022.12.31.	2021.12.31.		'21.01.01 ~ '22.12.31.	'20.01.01 ~ '21.12.31.
유동자산	26,141	29,393	영업수익	6,056	9,798
고정자산	540	247	영업비용	6,687	6,236
자산총계	26,681	29,640	영업이익	-631	3,562
유동부채	473	815	영업외수익	0	48
고정부채	40	903	영업외비용	0	66
부채총계	513	1,718	영업외이익	0	-18
자본금	15,800	15,800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631	3,544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이익잉여금	10,368	12,122	법인세비용	-109	784
자본총계	26,168	27,922	당기순이익	-522	2,760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3.10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투자 일임	총계
	주식	혼합	혼합	채권	재간접							

		주식	채권								
수탁고	2,005	152	522	5,070	1,676	1,135	1,137	416	1,632	3,250	2,28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 개요

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T. 1588-9999, www.kbstar.com)
회사 연혁 등	2001.11.01. 국민·주택 합병은행 출범 2002.12.26. 제1회 정보보호대상 우수상 수상(정보통신부) 2003.09.30. 국민카드(주) 합병 2007.11.13.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2008.09.29. KB금융지주 공식출범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02-6714-46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www.keb.co.kr) 내 소개 참조.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판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설립일	2000.05.29.	2000.06.20.	2000.06.16.	2011.06.09.
연락처	02-399-3350	02-3215-1400	02-398-3900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와 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생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는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1)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 ① 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할 것
 - ② 법 제 229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③ 집합투자규약에 다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 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제 4 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② 법 제 191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개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 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 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종류 수익증권 추가를 위한 경우이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 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 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 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타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자투자 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 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 247 조제 5 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⑧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⑩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 기준

구분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의 거래	<p><input type="checkbox"/> 평가 항목</p> <p>증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개사를 선정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선정방법</p> <p>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증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매월 1회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하며,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Compliance, 시장정보제공능력, 매매체결능력 항목순으로 상위점수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증개사 순위를 구분 결정합니다.</p> <p>단, 준법감시팀 및 RM 제시, 부정연루 등 결격사유 발생 증개사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 집합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 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거래상대방과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특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하여진 전환가격에 기초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